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9 선고 2022가단5201498 판결 [보증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순

피고 B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찬

변론종결 2024. 3. 12.

판결선고 2024. 4.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522,85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3. 10.부터 2024. 4. 9.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 50%씩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92,7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 8.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 12. 27.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C공사를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2018. 7. 4.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원도급계약 중 E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2,841,300,000원, 공사기간 2018. 7. 5.부터 2020.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 2019. 12. 24. 공사금액을 2,942,610,000원으로 증액하는 1차
변경계약, 2020. 6. 1. 공사금액을 3,007,295,000원으로 증액하는 2차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3) D은 2018. 7.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보증금액 284,130,000원,

계약금액 2,841,300,000원, 보증기간 2018. 7. 4.부터 2020. 12. 31.까지, 보증채권자 원고로 하는 계약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변경된 공사금액에 따라 보증금액을 총 300,729,5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른 계약보증서를 피고로부터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이하 위 보증계약 및 변경된 보증계약을 총칭하여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이라 한다).

4)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이하 '이 사건 계약보증약관'이라 한다)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원고는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으로 갑 제4호증의 4(공사이행보증약관)를 제출하였으나, 그 문언 및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은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약관과 동일)인 사실이 인정된다].

제3조(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권자가 보증 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을 말합니다.

제5조(장기계속공사의 보증책임)

- ① 보증채권자와 발주자가 체결한 계약이 장기계속공사로 보증채권자가 연차별 계약을 이행·완료하여 계약보증금을 반환받았거나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이행·완료한 계약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② 조합은 제1항에 의거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보상범위)

- ① 조합이 지급하는 금액은 보증금액 이내에서 보증사고로 인하여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으로 합니다.
- ② 실제 손해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액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내용보다 채무자에게 불리한 때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1. 채무자의 교체에 따라 증가된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금액으로 합니다.

2. 이 계약의 해제·해지 이후 해당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 후속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

제7조(보증금의 지급기한)

- ① 조합은 보증채권자의 보증금 청구문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보증채권자의 심사자료 제출이 지연되거나 제출한 심사자료에 대해 정당한 이의가 있어 소명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지연일수 및 소명에 소요된 일수는 제외하기로 합니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

1) 원고와 D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시공일정과 관련하여, 1차 시공은 2018. 7.부터 같은 해 9.까지, 2차 시공은 2020. 7.부터 같은 해 10.까지 진행하기로 정하였고, D은 2018. 7. 30.부터 2018. 10. 15.까지 1차 시공을 완료하였다.

2) 한편, D은 2차 시공 중인 2020. 10.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에게 기상악화 등의 이유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여 2020. 10. 6. 잔여공사를 포기할 것임을 통보하였으며, 원고는 2020. 10. 13. D에게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공문을 발송하였고 위 공문은 그 무렵 D에게 도달하였다.

3) 원고가 D에게 지급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은 아래와 같고, 2018. 8.부터 2018. 12.까지 D에게 지급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은 합계 1,552,067,000원이다.

기성월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공제처리금액	실지급금액
2018. 8.	645,480,000원	1,144,260원	644,335,740원
2018. 9.	654,500,000원		654,500,000원
2018. 10.	77,000,000원		77,000,000원
2018. 12.	175,087,000원		175,087,000원
2020. 7.	330,000,000원		330,000,000원

2020. 8.	117,700,000원		117,700,000원
2020. 9.	291,500,000원		291,500,000원
합계	2,294,600,000원		

4) D은 2021. 1. 15.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03113호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의 미지급 공사대금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3. 9. 8. 이 사건 하도급공사는 D의 귀책사유로 지연된 것이고, D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D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보증금 청구

원고는 2021. 1. 8. 피고에게 D의 보증사고 발생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6, 8, 9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D의 책임있는 사유로 해지되어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상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잔여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으로 292,71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보증금청구일인 2021. 1. 8.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장기계속계약이 아니고, 이 사건 계약보증약관 제5조는 하도급계약이 장기계속계약이 아닌 경우 또는 계약보증금이 아닌 계약보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보증책임의 한도가 제한되지 않는다.

나. 피고

1)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에 D의 책임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상의 보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상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보증약관 제5조에 따라 D이 2018년에 이행완료한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액 155,206,700원에 대하여 보증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피고의 보증책임의 한도가 제한되고, 원고가 해지 후 지출한 적정 공사비를 감안하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도 없어 피고가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보증사고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D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이행을 거절하여 원고의 2020. 10. 13. 해지 통보로써 적법하게 해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나. 보증책임의 범위

1) 보증책임의 한도

위 인정사실 및 을 제2호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보증약관 제5조는 보증채권자와 발주자가 체결한 계약이 장기계속공사로 보증채권자가 연차별 계약을 이행·완료하여 계약보증금을 반환받았거나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이행·완료한 계약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조합은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보증채권자인 원고와 발주자인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2017. 12. 27. 체결한 이 사건 원도급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이행하는 것으로 진행되는 사실, D이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중 1차 시공을 2018. 7. 30.부터 2018. 10. 15.까지 완료하였고, 원고도 위 1차 시공과 관련한 발주자와의 차수별 공사를 완료하여 발주자로부터 위 완료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반환받았거나 반환받을 수 있게 된 사실, D의 1차 공사 이행 완료 금액이 1,552,067,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보증약관 제5조에 따라 D의 2018년도 1차 공사 이행 완료 금액 10%(D은 공사금액 중 10%에 해당 금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보증서를 제출하였다)에 해당하는 155,206,700원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면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금의 한도는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의 총 보증금 300,729,550원에서 위 155,206,700원을 공제한 145,522,850원(=300,729,550원 - 155,206,700원)이다(피고는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의 총 보증금이 원고의 소장 주장과 같이 292,710,000원으로 감액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설계변경으로 D과의 최종 공사대금이 3,007,295,000원에서 2,927,100,000원으로 변경됨으로써 보증금액도

292,710,000원으로 변경되었다고 소장에서 주장함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는 제4차 변론기일에 공사대금이 2,927,1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는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철회하였는바, 원고와 D이 최종 공사대금 감액을 합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D도 이 사건 관련판결 사건에서 최종 공사대금이 3,007,295,000원이라고 주장하여 위 판결에서도 위 금액이 최종 공사대금으로 인정된 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첨부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31조는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대금을 감액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을 원고 주장과 같이 감액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공사대금 감액 및 이에 따른 피고의 총 보증금액 감액 진술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보증약관 제5조는 이 사건 원도급계약 뿐 아니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도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보증약관 제5조는 보증채권자와 발주자 사이의 원도급계약 외에 보증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하도급계약, 즉 원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도 장기계속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6907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원고는 위 약관 제5조는 계약보증금이 아닌 계약보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계약이행보증서는 계약보증금에 갈음하여 교부하는 것으로서 계약이행보증서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보증금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 약관 제6조는, 피고가 지급할 보증금액은 보증금액 이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으로, 채무자의 교체에 따라 증가된 금액(다만, 그 금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금액) 또는 계약 해지 후 해당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 후속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 후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완공을 위하여 공사비로 950,175,306원(부가세 포함)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후속 공사계약내용 및 그 금액 등에 비추어 위 잔여공사비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실제 지급한 부가세도 위 실제 손해액 규정 범위에 비추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실제 손해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제외할 근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증사고로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액 한도인 145,522,850원을 초과하는 237,479,806원(= 기 지급 공사대금 2,294,600,000원 + 잔여공사대금 950,175,306원 - 최종 공사대금 3,007,295,5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으로 145,522,8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원고는 보증금 청구일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보증약관 제7조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보증금 청구문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보증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위 6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위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1. 3.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45,522,85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3.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24. 4.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